

	홍보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9. 30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대내외 홍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월간, 분기별 홍보계획을 심의한다.
2. 홍보예산 및 결산
3. 홍보물 제작, 배포
4. 홍보매체 선정 및 이용계획
5. 기타 홍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4조(구성)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며, 간사는 기획산학처장으로 한다. 위원은 외부위원 3명을 포함시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또는 재적 위원 1/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의결)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